

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박희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6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11.

발 의 자 : 박희자 · 진선미 · 박원서 ·
방민수 · 서회원 · 제갑섭 ·
김연후 · 이승일 · 한경혜
의원 (9명)

1. 제안이유

강동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위원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동구협의회 소속 임원을 명시함으로써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위원 규정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총무과(대외협력팀)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1) 전 문: 별첨

2) 입법예고 (2019. 2. 12. ~ 2. 16.)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 같이 신설한다.

5.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동구협의회 회장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(신설)</u>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동구협의회 회장</u>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